

의안번호	제 415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(제 283 회)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9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9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: 2014. 12. 31까지(안 제9조)
-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 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채무상환기금”을 “지방채상환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채무상환기금”을 “지방채상환기금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책임중”을 “책임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놓고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

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조제1항과 제2항, 제4조제1항과 제2항,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7조제1항과 제2항,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 쓴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<u>지방채 무상환기금</u>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지방채무상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<u>각호</u>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채무상환비 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 <p>③심의위원회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	<p><u>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<u>지방채상환기금</u>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<u>지방채상환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<u>각 호</u>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채무상환비 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<u>각 호</u>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. <u>기타</u>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제6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 <p>③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④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<u>책임중</u>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회계관리) ①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<u>비치하고</u>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·보고)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당해연도</u>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	<p>4. <u>그 밖에</u>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</u>에서 대행한다.</p> <p>제6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 <p>③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<u>책임 중</u>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회계관리) ①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<u>갖추어 놓고</u>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·보고)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연도</u>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현행	개정안
<p>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3. <u>그 밖에</u>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현행 제9조와 같음)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부의하는 사항
-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